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정	2002. 7. 6.	제383호
개정	2003. 12.10.	제420호
	2004. 11. 3.	제438호
	2005. 3. 25.	제442호
	2005. 10.10.	제460호
	2007. 2.28.	제486호
	2007. 5.29	제48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이하 "전임교원"이라 한다)의 신규임용, 재계약임용, 재임용, 정년보장임용 및 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 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간) 전임교원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교수 : 정년까지(정년보장을 받지 못한 교수 : 6년)
- 부교수 : 6년
- 조교수 : 3년
- 전임강사 : 2년

제2장 신규임용

제3조(임용방법) ①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하여 상당기간 충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총장은 원활한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별도의 자격기준과 심사기준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채용분야·채용과목·채용예정인원 및 자격요건 등은 교무과장과 해당 학부(과)의장·훈련과장·교과목 담당교수의 협의를 거쳐 교무회의 심의 후 총장이 정한다. 단, 필요시 교무과장은 교원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 별도로 교무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④ 채용공고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 1개월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한다.

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대학의 학사학위소지자가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채용한다.

제4조(특별채용의 요건) ① 특별채용은 학부(과)장, 훈련과장이 총장에게 요청하고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② 특별채용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1호와 2호는 교양교직, 전공

이론 및 전공실기분야, 3호 내지 6호는 전문실기 분야 해당자로 한다.

1. 관련분야의 저명한 교수 또는 인사로서 학위논문을 제외한 최근 4년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실적물이 자연계 300%(인문사회 200%)이상 인자
 2. 관련분야의 저명한 교수 또는 인사로서 연구실적물이 국내·외에서 특허를 득한 자
 3. 국가대표선수로 올림픽에서 1회이상 입상자, 권위있는 국제대회에서 2회 이상 우승한자 또는 한국신기록 이상 수립자(육상, 수영)로서 체육특기자 육성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 및 대한체육회 인정기관)에서 지도자(감독·코치) 또는 초빙교수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국가대표 감독 또는 코치로 올림픽에서 1회 또는 권위있는 국제대회에서 2회 이상 우승(금메달) 또는 한국 신기록 이상 수립(육상, 수영)한 지도경력이 있는 자(동·하계)
 5. 체육특기자 육성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 및 대한체육회 인정기관)에서 지도자(감독·코치) 또는 초빙교수 경력 4년 이상 자로서 근무기간 중 올림픽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이상 국제대회에서 입상 지도실적 있는 자(동·하계)
- 단, 3호 및 4호의 권위있는 권위있는 국제대회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이와 동등하다고 본교가 인정하는 대회를 말함.

제5조(임용자격) 고등교육법 제16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전문실기분야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자
3. 특정분야는 학사학위 취득 후 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경력과 특별한 실적이 있는 자

제6조(임용직급) 신규 임용직급은 전임강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수 : 4년제 대학 교수 경력이 있는 자.
2. 부교수 : 4년제 대학 부교수 경력이 있는 자.
3. 조교수
 - 가. 4년제 대학 조교수 경력이 있는 자.
 - 나.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인 자.
 - 다. 석사학위 취득 후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전문실기에 한함)

제7조(최초임용기간) ①신규임용 교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약제로 임용하되, 다음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전임강사 : 2년이내
2. 조교수 : 3년이내
3. 부교수~교수 : 6년이내

②계약제 임용교원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 ①신규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본 대학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임용 심사기준 제 · 개정 심의
2. 채용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3. 신규채용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등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채용심사위원회는 전문분야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공분야 교원을 참여시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전형절차) ① 신규채용은 기초심사,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 등 단계별로 실시하며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기준 및 결과 공개) 신규채용에 지원한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 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신규 채용이 확정된 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공개한다.

제11조(여성 채용) 교과목의 특성과 채용 예정 학부(과)의 여교수 현원을 고려하여 채용시 여성 을 명시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3장 재계약 임용

제12조(대상자) 재계약임용은 계약임용 교원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자, 계약조건을 변경하고 자 하는 자 및 재임용 대상 교원 중에서 계약임용을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3조(절차) 재계약임용은 재계약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한다.

제14조(서류심사) ① 재계약을 희망하는자는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임용계약서 제6조(계약기간 중 의무)의 이행실적 자료를 계약기간 만료 3월 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장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임용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제15조(심의) ① 재계약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임용심사대상자의 전공분야 관련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재계약임용심사위원회는 재계약 대상자에 대하여 심의하여 적절한 경우 임용대상자로 추천 한다. 다만, 재계약임용심사위원회가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임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위원장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재계약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임용) ① 총장은 인사위원회의 동의에 대하여 필요한 검토를 거쳐 적절한 경우 임용하되,

재계약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부 교수 : 5년 이내
3. 조 교수 : 3년 이내
4. 전임강사 : 2년 이내

② 총장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필요한 경우 임용을 결정하기에 앞서 개별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제7조 제2항에 의한다.

제17조(직급 및 정년보장) 재계약임용자의 직급 및 정년보장 등은 이 규정의 승진임용 및 정년 보장임용 규정에 따른다.

제18조(통보) 재계약임용 여부는 계약기간 만료 2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재임용

제19조(대상자) 재임용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전임교원 중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를 대상(정년보장임용대상자 제외)으로 한다.

제20조(절차) ① 재임용은 전임교원 재임용심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심사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

② 재임용 대상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재임용 예정일 3월전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재임용여부를 재임용예정일 2월전까지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재임용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재임용 연구실적) ①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은 직전 임용기간 중에 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200%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정년보장임용

제22조(정년보장교원 임용대상)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이 대학교 재직중인 교수로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
2. 교수로 승진임용 되는 자.
3. 신규 임용교수로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

제23조(정년보장교원의 정수)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수의 정수는 전임교원의 100분의 70이내로 한다.

제24조(정년보장 임용) ① 정년보장임용은 제22조의 대상자 중 정년보장교원 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②정년보장임용심사기준은 교원연구실적심사기준 [별표 1. 5.]의 연구실적 등 심사기준에 의한다.

제25(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①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정년보장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승진임용

제26조(대상자 및 승진소요기간) 승진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승진소요기간이 경과된 자로 한다.

1. 조교수 : 본교에서 전임강사로 2년이상 근무한 자.
2. 부교수 : 본교에서 조교수로 4년이상 근무한 자.
3. 교수 : 본교에서 부교수로 5년이상 근무한 자(다만, 계약으로 임용된 교원은 부교수로 6년 이상 근무한 자)

제27조(승진임용 심사기준) 승진임용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 학술활동 실적
2. 학생의 교수 및 생활지도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수로서의 품위유지 등

제28조(승진임용 연구실적 및 경기력지도실적) ①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은 해당 직급에서 발표된 전공 관련 연구실적물로서 직급별 제출 편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임강사 → 조교수 : 200%(연구전담 300%)이상
2. 조교수 → 부교수 : 300%(연구전담 400%)이상
3. 부교수 → 교수 : 400%(연구전담 500%)이상

②연구실적물 중 논문의 경우에는 국제전문학술지 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것이어야 한다.

③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 제33조에서 정한 승진에 필요한 평균평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④계약제 임용 전문실기 교원과 예능계 교원은 제1항에서 정한 연구실적물을 총장이 인정하는 경기지도실적 또는 기타 연구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항 경기지도실적 평가는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3의 전문실기분야 연구활동영역 평가 항목 및 배점표의 국내전문학술지 배점에 해당되는 점수를 연구실적 100%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제29조(승진임용시기) 승진임용은 매년 4월 1일, 10월 1일자로 한다.

- 제30조(계약임용교원의 승진절차)** ①계약으로 임용된 교원(이하 "계약임용 교원"이라 한다)의 승진임용은 승진임용심사위원회 심의 및 인사위원회 동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계약임용교원의 승진임용 대상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승진임용예정일 3월 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총장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승진임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③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임용심사대상자의 전공분야 관련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승진임용심사위원회가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위원장이 총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승진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총장은 계약임용교원의 승진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동의에 대하여 필요한 검토를 거쳐 적절한 경우 임용한다. 다만, 총장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제7조 제2항에 의한다.

제7장 보 칙

제31조 (연구실적)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재계약을 위한 연구실적의 인정범위, 인정기간, 인정율 심사는 별표1의 "교원연구실적심사기준"에 의한다.

제32조 (교수자격인정)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 재계약을 위한 연구실적 환산율 산출기준과 예·체능 및 창작실기계의 연구업적 평가를 위한 자격심사 평정기준은 별표2의 "연구실적환산율 산출기준 및 자격심사 평정기준"에 의한다

부칙(2002. 7. 7 규정 제383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한국체육대학교교육공무원임용에관한규정, 한국체육대학교전임교원신규임용규정, 한국체육대학교교원연구실적심사기준, 한국체육대학교교수자격인정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교원(비계약제)은 제28조(승진임용 연구실적)에도 불구하고 직급 구분없이 200%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실적물 중 논문의 경우에는 2005.10.1이후 승진대상자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학술지에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부칙(2003. 12. 10. 규정 제 420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1. 3. 규정 제 438 호)

-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전문실기 계약제 임용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임용된 전문실기 계약제 임용 교원의 재계약, 승진임용 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2005. 3. 25. 규정 제 442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 10. 10. 규정 제 460 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2. 28. 규정 제 486 호)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규정) 이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제 임용교원과 부교수로 재직중인 교원은 최초의 재계약 또는 승진임용시 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7. 5. 29. 규정 제489호)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은 최초의 재계약임용, 재임용 및 승진임용시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교원연구실적 심사기준

1. 연구실적물의 범위

- 가.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실적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 체제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 나. 연구실적물은 발행된 실적물에 한하며, 일간지(교내신문) 발표 실적물과 게재예정 실적물은 인정하지 않는다.
- 1) 저서(신규채용에는 양적심사에만 인정)
 - 2) 학술지
 - 3) 논문집
 - 4) 정기간행물(신규 채용시 불인정)
 - 5) 예능계는 연구, 발표, 전시, 입선 등
 - 6) 게재예정 연구실적물

가) 신규채용 :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승진임용, 재임용 :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게재되어 발간된 연구실적물만 인정한다.
 - 다.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논문

2. 연구실적물의 인정

- 가. 중·고등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인정하되 강의용 자료와 참고서 등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나. 예·체능계는 총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 다. 학술연구조성비 지급규정에 의거 연구한 연구 보고서
- 라. 전문대학 교재 편찬위원회에서 집필된 교재
- 마. 공동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
- 1) 1인 연구(편찬) : 100%
 - 2) 2인 공동연구(편찬) : 70%
 - 3) 3인 공동연구(편찬) : 50%
 - 4) 4인 이상 공동연구(편찬) : 30%
 - 5) 석사학위 취득 논문 : 100%
 - 6) 박사학위 취득 논문 : 200%
- 단, 석사 및 박사학위(취득자)논문을 2인(지도교수 포함) 공동명의로 게재한 때에도 학위 취득자 단독논문으로 인정한다.
- 7) 1인 편저 또는 번역서는 20%로 하되, 2인 이상 편저 또는 번역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바. 예·체능계 실기(연구, 발표, 전시, 입선 등)에 대한 연구실적물은 [별표 2. 다]의 연구실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평점 1점을 연구실적물 100%로 인정한다. 이 경우에 예·체능계 실기 분야의 연구실적은 총 연구실적물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전문실기교원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 사. 재임용 또는 승진임용 기간이 중복되는 연구실적물 평가 점수는 서로 대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연구실적 심사

- 가. 연구실적은 해당 전공분야의 3인 이상이 심사하되, 심사대상자의 직위이상의 자로 위촉하고 그 중 1인 이상은 타교에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석·박사학위취득논문, 국제전문학술지(SCI, SSCI, A&HCI)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연구실적물에 대해서는 심사를 생략하고 “수”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 나. 연구실적 심사평정은 각 편이 평균 “우”이상이어야 한다.
- 다. 연구실적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4. 연구실적 편수 및 인정기간

- 가. 신규임용 : 전임교원신규채용심사에관한규정 제11조에 정한 연구실적물.
- 나. 재계약임용 : 계약제 교원임용계약서(별지 서식) 제6조에 정한 연구실적물.
- 다. 재임용 : 이 규정 제21조에 정한 연구실적물
- 라. 승진임용 : 이 규정 제28조에 정한 연구실적물
- 마. 정년보장임용 : 이 규정 제24조에 정한 연구실적물
- 바.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취득논문
- 당해 직급 재직기간 중 발표된 논문에 한하되,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5. 임용구분별 연구실적 등 심사기준

임용구분	직급별	기간	연구실적	업적평가 점수	임용심사 평정점수	비 고
승진임용	전임강사 → 조교수	2년	200%이상 (연구전담 300%)	120점 이상 (연구전담 170점 이상)	70점이상	
	조교수 → 부교수	4년	300%이상 (연구전담 400%)	120점 이상 (연구전담 170점 이상)	70점이상	
	부교수 → 교 수	6년 (비계약 제 5년)	400%이상 (연구전담 500%)	120점 이상 (연구전담 170점 이상)	70점이상	
재계약임용 (재임용)	전임강사 → 조교수	2년	200%이상 (연구전담 300%)	120점 이상 (연구전담 170점 이상)	70점이상	※ 재임용대상(비계약제) 교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연구실적물량은 200%임
	조교수 → 부교수	3년	300%이상 (연구전담 400%)	120점 이상 (연구전담 170점 이상)	70점이상	
	부교수 → 교 수	5년	400%이상 (연구전담 500%)	120점 이상 (연구전담 170점 이상)	70점이상	
정년보장 임용	부교수 → 교 수	6년 (비계약 제 5년)	600%이상 - 연구전담 700%이상 - 전문실기는 계약조건의 120%이상	120점 이상 (연구전담 170점 이상)	70점이상	신설
연구실적 인정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실적물은 학술논문 또는 학술저서에 한함. 논문은 국제전문학술지 또는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인정하는 공연실적 인정(무용). 전문실기 교원은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으로 하며, 논문 또는 저서의 연구 업적평가점수 20점이상 포함(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 제33조). 비계약제 임용교원 논문의 경우 1/2이상은 학술진흥재단 등록 학술지 논문임 연구실적, 업적평가, 심사평정 점수는 해당년도 평가 점수임 					

[별표 2]

연구실적환산율 산출기준 및 자격심사 평정기준

가. 연구실적환산율 산출기준

경력 내용	인정환산율(%)
1. 교육경력	
가.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① 국방대학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과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중앙공무원 교육원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100
②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100
③ 학력인정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 근무한 경력	100
④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 근무한 경력	60
⑤ 대학 또는 전문대학 시간강사의 교육경력(주당 5시간이하)	50 단, 주당 5시간 이하는 30%, 주당 5시간 초과시는 시간당 10% 가산하여 50%를 넘지 못한다.
나. 고등학교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① 중·고등학교 교원 교육경력이 (전문) 대학에서 담당한 학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70
②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70
③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전문)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70
④ 유치원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전문)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70
다. 조교 및 체육코치 등	
① 대학 (총)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70
②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70

경력 내용	인정 환산율 (%)
<p>2. 연구경력</p> <p>가. 최종 학위취득자</p> <p>① 박사학위 과정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연구경력</p> <p>② 석사학위 과정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연구 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 · 박사과정 재학년수 (석 · 박사과정을 포함하되, 석 · 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석사과정 재학년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p>나. 최종 학위과정 수료자등</p> <p>①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 한 자의 연구경력. 단,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그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자의 연구경력</p> <p>②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 한 자의 연구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 · 박사과정 재학년수 (석 · 박사과정을 포함하되, 석 · 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 0.7 석사과정 재학년수 × 0.7 (단,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p>다.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경력</p> <p>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 실습을 포함한다)를 대학 · 전문대학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p>	100
<p>라. 기타의 연구기관이나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한 경력</p> <p>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p>	100
<p>3. 산업체 등 근무경력</p> <p>가.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p> <p>①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 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p>	70

경력 내용	인정환산율 (%)
②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전공한 분야의 기술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③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70 70
나. 민간기업체 등 근무경력	
① 공과대학(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과 포함)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대기업체 등 · 중기업체 등	50
② 상과대학 졸업자로서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	50
③ 대학 신문학과 졸업자의 언론기관에서 기사 및 편집원으로 근무한 경력	50
④ 대학 (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 대기업체 등 · 중기업체 등	50
다. 자격증 소지자 등의 근무경력	
① 판사 · 검사로 근무한 경력	100
② 변호사 개업기간	70
③ 계리사 개업기간	삭제
④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공인감정사 · 토지평가 · 변리사 개업기간	50
⑤ 한국해양대학, 부산 수산대학, 목포해양대학 졸업자로서 잡종 1등 항해사(기관사)이상 면허소지자의 원양구역 승선경력, 항공대 졸업자중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100

경력 내용	인정 환산율 (%)
라. 의사 등 근무경력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의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② 의과대학 졸업자의 (한)의원 개업기관 ③ 국가 또는 공공단체 및 교육부장관 인정기관 전문의사 근무 ④ 국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병원,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의 전임 간호원 근무경력	70 50 70 70
마. 성직자 근무경력 ① 신학대학 졸업자의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한 경력 ②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50 50
바. 외국공관 근무경력 ①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70
사. 예·체능 관련 단체 주요임원 ①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예 관련 단체 주요 간부	70

나. 교수자격인정심사기준에 의한 교육부장관 인정기관 범위

번호	경력 내용	인정 환산율(%)	교육부장관 인정기관 및 시설범위
(별표 2) 가. 3나의 ④관련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공분야를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 대기업체 등 · 중기업체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자로서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병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정한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체와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단체(병원 기업체 포함) 대학전공분야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정한 중소기업체로서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기업체
(별표 2) 가. 3라의 ④관련	국가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병원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의 전임간호원의 근무경력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개설된 종합 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기업체
(별표 2) 가. 3나의 ①관련	공대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대기업체 등 · 중기업체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정한 중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체로서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면서 당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상(건설업은 50인이상)이고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 또는 고도의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기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정한 중기업체로서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기업체

다. 자격심사평가준

연 구 업 적	평 점
1. 미술	
가. 국제전·국전·상공전	
○ 입선 1회	1점
○ 특선이상 1회	2점
○ 국제전 출품 1회	0.5점
나. 지역규모공모전	
○ 특선이상 2회	1점
○ 입선 4회	1점
다. 공인된 개인전	
○ 개인전 1회	1점
○ 2인전 1회	0.5점
○ 기획전 1회	0.5점
라. 공인된 단체전의 회원전 및 공모전	
○ 입선 1회	0.3점
○ 특선이상 1회	1점
마. 공인된 국내외 초대전 출품 1회	1점
바. 국제전 심사위원회 1회	1점
사. 미술대전등 심사위원	
○ 미술대전,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1회	1점
○ 공인된 공모전 심사위원 1회	0.5점
○ 시·도단위 미술전람회심사위원 1회	0.5점
2. 음악	
가. 국내외에서 인정된 독창회·독주회·개인작곡발표회 : 1회	1점
나. 국내·외에서 인정된 협연 및 전문연주단체에의한 창작품초연 1회	0.7점
다. 인정된 발표회의 3종창이상, 3종주이상 단독음악회 및 3인 이상 작품발표회 및 반주 1회	0.5점
라. 인정된 종합연주회 등	
○ 인정된 종합연주회 중주 및 반주 3회	0.3점
○ 협주곡협연, 오페라주역 1회	1점

연 구 업 적	평 점
3. 체 육	
가. 공인된 체육단체에서 개인연구발표회 : 1회	1점
나. 올림픽 경기출전	1점
다. 전국대회 입상 : 2회	1점
라. 국제공인 심판자격 : 1회	1점
마. 공인된 체육지도자 연구회 강사 50시간	1점
4. 창작실기 활동	
가.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특선 1회	1점
나.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입선 2회	1점
다. 관계분야에 대한 훈장	2점
5. 학 · 예술관계 및 창작실기 활동분야의 훈장1회	2점
6. 무용	
가. 국내 · 외에서 인정된 개인 공연발표(안무)	1점
나. 국내 · 외에서 인정된 공연 발표(안무)..... 2인	0.7점
다. 국내 · 외에서 인정된 공연 발표(안무)..... 3인	0.5점
라. 국내 · 외에서 인정된 공연 발표(안무)..... 4인 이상	0.3점
※ 공연발표는 공인된 기관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

계약제 교원 임용 계약서(예시)
(교양·교직·전공이론분야 / 전공실기 분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체육대학교총장을 “갑”이라 하고, 계약제 교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한국체육대학교총장

(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2조(계약 부서 및 직급) “갑”은 “을”을 한국체육대학교 학과(부)로 임용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급여 및 수당) ① “을”的 호봉은 호봉으로 하고, “갑”은 “을”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 및 한국체육대학교기성회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한다.

제5조(주당강의책임시간) ① “을”은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주당강의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한 경우에는 한국체육대학교교수시간 및 강사료지급규정에 의한 초과강사료를 지급한다.

제6조(계약기간 중 의무) ① “을”은 계약기간 중 교육 및 연구 등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 및 개발
2. 학위논문의 지도 및 심사
3. 학생지도 및 상담
4. 연구실적물 발표

② “을”은 계약기간 중 제1항의 4호와 관련, 연구실적물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여야 한다.

1. 전임강사 : 200%이상
2. 조교수 : 300%이상
3. 부교수 : 400%이상

③ 연구실적물 중 논문의 경우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학술지에 게재된 것이어야 한다.

④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에서 정한 재계약에 필요한 평균평점이상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위 및 복무) “을”은 계약기간 중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가지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학내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제8조(재계약 조건 및 절차) ① “갑”은 “을”에게 계약기간 종료 6월 전에 재계약 심사 대상자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갑”에게 계약기간 종료 4월 전에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재계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의 이행여부 등을 심사하여 계약기간 종료 2월 전 까지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다.

③ “을”은 제2항의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갑”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을”에게

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을”은 재계약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달이 속하는 학기말에 자동적으로 퇴직 한다.

⑥ “을”이 한국체육대학교교육공무원임용에관한규정의 승진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갑”은 “을”에 게 승진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9조(계약조건의 변경) ① “갑”은 계약기간 중에는 “을”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的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은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기간 중 법령·규정 또는 계약에 정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강의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을”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기타)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한국체육대학교 제 규정에 따른다.

②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한국체육대학교총장 (인)

을)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입회인) 한국체육대학교 교무처장

[별지 제2호 서식]

계약제 교원 임용 계약서(예시)

(전문실기분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체육대학교총장을 “갑”이라 하고, 계약제 교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한국체육대학교총장

(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2조(계약 부서 및 직급) “갑”은 “을”을 한국체육대학교 학과(부)로 임용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급여 및 수당) ① “을”的 호봉은 호봉으로 하고, “갑”은 “을”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 및 한국체육대학교 기성회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한다.

제5조(주당강의책임시간) ① “을”은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주당강의책임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한 경우에는 한국체육대학교교수시간 및 강사료지급규정에 의한 초과강사료를 지급한다.

제6조(계약기간 중 의무) ① “을”은 계약기간 중 교육 및 연구 등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경기력 향상
2. 경기지도실적 이행
3. 학생지도 및 상담

② 경기지도실적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조건에 의한다.

③ “을”이 계약기간 중 제1항 2호의 경기지도실적을 이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경기지도실적을 아래 연구실적물 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1. 전임강사 : 200%이상
2. 조교수 : 300%이상
3. 부교수 : 400%이상

④ 연구실적물 중 논문의 경우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학술지에 게재된 것이어야 한다.

제7조(지위 및 복무) “을”은 계약기간 중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가지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학내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제8조(재계약 조건 및 절차) ① “갑”은 “을”에게 계약기간 종료 6월 전에 재계약 심사 대상자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갑”에게 계약기간 종료 4월 전에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재계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의 이행여부 등을 심사하여 계약기간 종료 2월 전 까지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다.

③ “을”은 제2항의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갑”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을”에게

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을”은 재계약 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달이 속하는 학기말에 자동적으로 퇴직한다.

⑥ “을”이 한국체육대학교 교육공무원임용에관한규정의 승진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갑”은 “을”에 게 승진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9조(계약조건의 변경) ① “갑”은 계약기간 중에는 “을”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的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은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기간 중 법령·규정 또는 계약에 정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강의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을”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기타)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한국체육대학교 제 규정에 따른다.

②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한국체육대학교총장 (인)

을)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입회인) 한국체육대학교 교무처장